

[심 사 보 고]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

○ 제 출 일 : 2003. 11. 11.

○ 제 출 자 :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03. 11. 14.

다. 상정일자 : 2003.11.24. (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 상정의결)

라. 의안번호 : 제 2003 -55호

2.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제정이유

○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상수원관리지역 및 댐주변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사업 지원 및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함.

나. 주요골자

○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.
(안 제1조 및 제2조)

○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지원사업을 선정토록 함. (안 제3조)

- 읍·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주민지원 사업 추진위원회를 설치·운영토록 하고 위원회는 주민지원 사업 및 신청대상자에 대한 지원여부 등을 심의토록 함.

(안 제4조 및 제5조)

- 읍·면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토록 함. (안 제6조)
- 군수는 사업계획수립시 및 지원사업계획 확정시 해당 읍·면장에게 통보하고, 읍·면장은 해당이장 및 지원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. (안 제7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 상수원관리지역 및 댐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형식과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생략

5. 토론요지

- 생략

6. 수정안 요지

-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- 본 제정 조례안은 거창군 상수원관리지역 및 댐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그 체제나 형식,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함.

8. 소수의견의 요지

- 생략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생략